

2021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51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6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0. 10. 30.
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회부일자 : 2020. 11. 2.

4. 상정일자 :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0. 12. 7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교육행정국장 손영순)

1. 제안이유

-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·적정한 보상·지원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'21년도 기금의 규모는 144억 3,800만원으로, '20년도에 비해 3억 3,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
 - '20년도말 기준 63억 9,300만원이 조성됨
- 수입계획은 총 144억 3,800만원으로
 - 공제료 수입 67억 5,300만원,
 -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3,100만원,
 -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,000만원,
 -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9,300만원,
 - 전년도 이월금 73억 9,400만원임
- 지출계획은 144억 3,800만원으로
 - 공제사업비 56억 8,400만원,
 - 예방사업비 4억 7,800만원,
 - 학교폭력피해자 상담지원 2,800만원,
 - 인건비 등 운영경비 16억 500만원,
 - 학교안전기금 보유준비금 50억 6,900만원임
- '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억 9,300만원으로 예상됨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051호, 「**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**」은 '20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

(1) 기금개요

- **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**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설치한 기금(이하 '공제기금' 이라 함)으로,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'공제회'라 함)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·운용하는 기금임
- 동 기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및 타 시·도 교육청의 법령해석 의뢰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의 기금에 해당되어 의회의 심의·의결사항인 바, '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임
- '21년도 조성규모는 63억 9,300만원으로 금년도(73억 9,400만원)보다 △13.5%, △10억 100만원 감소한 규모로 제출됨

〈표 3-1〉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 성 액 (A)	2021년도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 성 액 (B=A+㉠-㉡)	증 감 (C=B-A)	증감률 (C/A)
		수 입 ㉠	지 출 ㉡			
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	7,394	7,044	8,045	6,393	△1,001	△13.5

○ '21년도 기금수지총액은 144억 3,800만원으로 '20년도(141억 100만원)보다 2.4%, 3억 3,600만원 증가한 규모임

〈표 3-2〉 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 입 계 획	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'21년 수입액	'20년 수입액	증 감 비율	항 목	'21년 지출액	'20년 지출액	증 감 비율		
합 계	14,438	14,101	336 2.4	합 계	14,438	14,101	336 2.4		
기 부 금	-	-	- -	비용자성 사 업 비	6,439	8,045	△1,605	△20.0	
예 치 금 회 수	7,394	6,639	754 11.4	인 력 운 영 비	1,269	1,291	△22	△1.7	
이자수입	27	104	△77	△74.0	기본경비	336	375	△39	△10.4
기 타	7,017	7,357	△340	△4.6	예 치 금	6,393	4,389	2,003	45.6

(2) 검토내용

1) 존속기한

○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,

- 동 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

2) 기금 수지현황

① 기금 수입계획

- 수입계획은 144억 3,8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('20년도말 기금조성액) 73억 9,400만원을 포함하여 기타수입 70억 1,700만원과 이자수입금 2,700만원으로 계획됨

〈표 3-3〉 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항 목	세 부 내 역	2021년도		2020년도	증 감	증 감 률
		금 액	구성비			
합	계	14,438	100.0	14,101	336	2.4
전 입 금	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	-	-	-	-	-
기 타 이 전 수 입	소 계	-	-	-	-	-
	교육청 교육금 고	-	-	-	-	-
	교육청 판결금 정산	-	-	-	-	-
	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금	-	-	-	-	-
예치금회수	소 계	7,394	51.2	6,639	754	11.4
	사무국 임차보증금	248	1.7	248	-	-
	공제사업 이월금	5,643	39.1	4,900	743	15.2
	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금 이월금	140	1.0	86	53	61.6
	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금	1,362	9.4	1,404	△41	△2.9
이자수입	예금 이자수입	27	0.2	104	△77	△74.0
기 타 수 입	소 계	7,017	48.6	7,357	△340	△4.6
	학교 안전 공제료	6,753	46.8	6,938	△185	△2.7
	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	30	0.2	24	6	25.0
	소방사업 수익	120	0.8	290	△170	△58.6
	학교폭력구상금 회수	93	0.6	94	△1	△1.1
	법인세환급금	20	0.1	9	11	122.2

- **학교안전공제료**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
 -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 금액 산정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'21년도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고 있음
 - '21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 고시금액보다 10% 인상된 6,958원(평균)으로 금년도 공제료 단가와 동일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됨

〈표 3-4〉 2021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

(단위 : 원, %)

구	분	유	초	중	고	평균단가
2021년도	공제회계획(A)	2,530	4,400	9,350	11,550	6,958
	교육부고시(B)	2,300	4,000	8,500	10,500	6,325
2020년도	공제회단가(C)	2,530	4,400	9,350	11,550	6,958
교육부 고시금액 대비 공제회 계획 증감률 {D=(A-B)/B}		10.0	10.0	10.0	10.0	10.0
전년도 대비 공제료 증감률		0.0	0.0	0.0	0.0	0.0

- '21년도 공제료 수입(67억 5,300만원)의 경우, 학생 수가 감소(△42,476명)되고 공제료 단가가 동결됨에 따라 '20년도(69억 3,800만원) 대비 △2.7%, △1억 8,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3-5〉 공제로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, 명)

연 도	당해연도 수입(A)		당해연도 공제로 수입(B)			학생 수(산출내역 기준)		공제로 단가 평균(원)	
		전년대비 증 감		구성비 (B/A)	전년대비 증 감		전년대비 증 감		전년대비 증 감
2021	7,044	△418	6,753	95.9	△185	939,654	△42,475	6,958	-
2020	7,462	853	6,938	93.0	863	982,129	11,243	6,958	935
2019	6,609		6,075	91.9		970,886		6,023	

※ 2021~2020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 기준이며, 2019년도는 결산서 기준임

○ **전기이월금**은 '20년도(66억 3,900만원) 대비 11.4%, 7억 5,400만원이 증가된 73억 9,400만원이고, **이자수입**은 '21년도 정기예금 만기이자분을 반영하여 '20년도 대비 △74.0%, △7,700만원이 감소된 2,700만원을 계획한 것임

○ **소방사업수익**은 '20년도(2억 9,000만원) 보다 △58.6%, △1억 7,000만원 감소된 1억 2,000만원으로 계획한 바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공제회가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 대한 '21년도 예상 수익금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

② 기금 지출계획

○ '21년도 지출계획은 144억 3,800만원으로 예치금 63억 9,300만원을 포함하여 비용자성사업비(64억 3,900만원), 인력운영비(12억 6,900만원), 기본경비(3억 3,600만원)로 지출계획한 것임

〈표 3-6〉 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항 목	세 부 내 역	2 0 2 1 년 도		2020년도	증 감	증 감 률	
		금 액	구성비				
합 계		14,438	100.0	14,101	336	2.4	
비용자성 사 업 비	소 계	6,439	44.6	8,045	△1,605	△20.0	
	공 제 사 업 비	소 계	5,683	39.4	7,226	△1,543	△21.4
		공 제 급 여	5,318	36.8	6,849	△1,530	△22.3
		전문가 자문 위탁	37	0.3	39	△2	△5.1
		보 상 심 사 위 원 회	21	0.1	25	△4	△16.0
		소 송 업 무 수 행	174	1.2	164	10	6.1
		손 해 방 지 및 긴급조치 비용지원	25	0.2	41	△16	△39.0
		판 결 금 지 원	50	0.3	50	-	-
		중 앙 회 분 담 금	57	0.4	57	-	-
		예 방 사 업 비	478	3.3	488	△10	△2.0
	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	27	0.2	71	△43	△60.6	
	학 교 폭 력 피 해 지 원	245	1.7	254	△8	△3.1	
	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	3	0.0	3	-	-	
	인 력 운 영 비	소 계	1,269	8.8	1,291	△22	△1.7
		급 여	952	6.6	972	△20	△2.1
수 당		231	1.6	236	△5	△2.1	
4 대 보 험		85	0.6	82	3	3.7	
기본경비	소 계	336	2.3	375	△39	△10.4	
	업 무 추 진 비	23	0.2	23	-	-	
	일 반 운 영 비	312	2.2	351	△39	△11.1	
예 치 금	소 계	6,393	44.3	4,389	2,003	45.6	
	보 유 준 비 금	5,068	35.1	3,128	1,940	62.0	
	이 월 금	1,324	9.2	1,261	63	5.0	

- 교육부의 「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에 따르면 지출계획중 ‘분야·부문’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‘교육’과 ‘예비비’ 분야의 제한적 세출구조를 적용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자체적인 세출 예산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
 - 교육비특별회계와 분리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동 기금의 성격은 물론 별도의 재무회계처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등 학교안전공제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추진비, 운영비 등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
 - 예산체계를 사업중심으로 재구조화 하고, 교육부 훈령이 정하는 ‘부문-분야-정책사업-단위사업-세부사업’ 체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예치금까지 단 1개의 정책사업(학교안전망 구축)에 포함시켜 운용계획한 바,
 -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지출항목이 단 1개의 정책사업내에 편성되어 있어 회계연도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, 기금운용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으나
 - 현행 관련 법령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정한 것은 기금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,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됨

- 특히, 예치금은 여유재원을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출항목이라는 점에서 개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 편성사례 임에도 불구하고, 서울시교육청의 「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」의 지출항목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보다 행정편의가 우선시된 편성사례로 사료되어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지출계획중 별도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(예치금)이 신설되어야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7〉 기금 세출예산구조

(단위 : 백만원)
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	업	내	역
유아및 초중등교육							
학교안전망 구축							
학교안전망 구축							
공제사업							
공제급여지급, 소송업무 수행, 중앙회 분담금, 판결금지원 등							
예방사업							
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, 전산화 사업,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등							
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							
상담및심리치료지원, 상담자문위원회 운영, 자문료, 상담지원제도 홍보							
학교폭력 피해지원							
학교폭력 피해지원, 구상권 행사 경비, 자문료							
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							
법률 자문료							
인적자원운용							
인건비							
보수, 수당							
업무추진비							
업무추진비							
운영비							
일반수용비, 임차료, 공공요금 및 제세, 여비, 회의비, 복리후생비 등							
예비비및기타							
보유준비금							
보유준비금, 임차보증금							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예치금							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예치금							
학교폭력피해지원금 예치금							
학교폭력피해 지원금 예치금							

IV. 심사결과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2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2020. 12. 16.)
3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205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30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설치·구성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‘2021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

2. 관련법규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및 제53조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-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·적정한 보상·지원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나. 2021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

○ 총괄

(단위: 천원)

수 입						지 출				
계	교특회계 전입금	기부금	예치금 회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비용자성 사업비	인 력 운영비	기 본 경 비	예치금
14,438,599	0	1	7,394,187	27,320	7,017,091	14,438,599	6,439,940	1,269,416	336,030	6,393,213

※ 기 타 수 입: 공제료 수입 +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+ 소방사업수익 + 학교폭력피해지원구상금 + 법인세 환급금 + 카드포인트
※ 비용자성사업비: 공제사업비 + 예방사업비 +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+ 학교폭력피해지원비 +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

4. 의결 요청(안) : 붙임 참조

붙임 2021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 1부.

【붙임】

2021년도
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
운용계획서



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
The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

I. 기금운용 총칙

1. 기금설치 개요

- 가. 설치근거 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
- 나. 설치목적 :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함
- 다. 설치년도 : 2007년

2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- 1)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
- 2)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 우선 지원
- 3)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사업에 대한 교육·홍보

나. 2021년 기금사업 개요

1)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(공제급여 지급)

- 가)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생명·신체의 피해를 보상
- 나) 피해 학생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활동의 조기복귀를 유도
- 다) 학교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합리적 지급기준 정립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

2)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

- 가)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,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
- 나) 상담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

3) 학교폭력 피해 지원

- 가)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,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
- 나) 피해자, 가해자 양측의 사전 의견 청취 절차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절차 개선

4)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

- 가) 실질적 사고 예방 및 교직원 직무별 특화된 사이버 안전 연수과정 운영
- 나) 초등학생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안전교육단 참여·운영
- 다) 학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 수집 및 재발방지책 수립·실행을 지원하는 서울학교안전보상시스템의 운영
- 라) 학교안전사고 통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안전 콘텐츠를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제작·보급하여 학교안전문화 확산에 기여

다. 기금 조성·운용 주요 내용

1) 기금 조성 총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'20년도말 조성액(a)	'21년도 기금운용계획		'21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용자금 미회수채권 (e)	총규모 (f=d+e)
		조성계획(b)	집행계획(c)			
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	7,394,187	7,044,412	8,045,386	6,393,213	-	6,393,213

2)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

- 가) 기금재원 : 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(학교안전법 제52조)

나) 재원별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공제료 수입	보조금	기금의운용 수익	기부금	전입금	기타 수입	총액
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	6,783,721	0	27,320	1	0	233,370	7,044,412

3) 지원대상

가)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: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

나) 학교폭력 피해지원 : 학교폭력 피해학생

다)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: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, 그 가족

4) 지원 기준 및 계획

가)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

(1) 요양급여

(가) 지급기준 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「학교안전법」 제36조에 따라 지급

(나) 지급규모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1년	2020년	증감
지급규모	3,083,200	4,420,000	△30.2%

※ 증감사유 : 코로나-19로 인한 원격, 등교수업 병행으로 사고건수 감소치를 반영하여 산출

(2) 장해급여

(가) 지급기준 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「학교안전법」 제 37조에 따라 지급

(나) 지급규모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1년	2020년	증감
지급규모	1,646,240	1,924,000	△14.4%

※ 증감사유 : 최근 3년 장해급여 지급건수와 코로나-19환경에 따른 사고건수 감소치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

(3) 간병급여

(가) 지급기준 :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「학교안전법」 제38조에 따라 지급

(나) 지급규모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1년	2020년	증감
지급규모	15,000(2건)	15,000(2건)	-

(4) 유족급여

(가) 지급기준 :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「학교안전법」 제39조에 따라 지급

(나) 지급규모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1년	2020년	증감
지급규모	534,000(1건)	450,000(1건)	18.7%

※ 증감사유: 2020년 하반기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인상

(5) 위로금

(가) 지급기준 :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 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「학교안전법」 제40조의2에 따라 지급

(나) 지급규모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1년	2020년	증감
지급규모	40,000(1건)	40,000(1건)	-

나)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

- (1) 지급기준 : 「학교안전법」 제10조의3에 따라 학교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,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

(2) 지급규모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1년	2020년	증감
지급규모	10,000	48,000	△79.2%

※ 증감사유 : 상담지원비 청구 건수 및 지원금액 증감추세 반영

다) 학교폭력 피해지원

- (1) 지급기준 :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「학교폭력예방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 지원

(2) 지급규모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1년	2020년	증감
지급규모	220,000	226,169	△2.8%

※ 증감사유 : 학교폭력피해치료비 청구 건수 및 지원금액 증감추세 반영

5) 공제기금 적립금

가) 적립금의 명칭: 보유준비금

나) 적립기준: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공제사업 지출액

평균의 1.2배

다) 최근 5년 보유준비금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 (예상)	2021년 (계획)
보유 준비금	8,084	8,916	6,935	5,382	5,891	5,069

6) 이월자금의 처리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 (예상)	2021년 (계획)
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금	162	156	147	140	112
학교폭력피해 지원금	1,608	1,567	1,490	1,363	1,212
합계	1,770	1,723	1,637	1,503	1,324

※ 당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 후 남은 잔액은 차기년도 지원금으로 이월 처리함

II. 자금운용 계획

1. 자금수지총괄

(단위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수입항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감	지출항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합 계	14,438,599	14,101,795	336,804	합 계	14,438,599	14,101,795	336,804
교특회계 전입금	0	0	0	비용자성 사업비	6,439,940	8,045,392	△1,605,452
기부금	1	1	0	용자성 사업비	0	0	0
용자금 회수	0	0	0	인력 운영비	1,269,416	1,291,445	△22,029
예치금 회수	7,394,187	6,639,688	754,499	기본경비	336,030	375,276	△39,246
이자수입	27,320	104,995	△77,675	예치금	6,393,213	4,389,682	2,003,531
기 타	7,017,091	7,357,111	△340,020	기 타	0	0	0

※ 기 타 수 입 : 공제료 수입,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, 소방사업수익, 학교
폭력피해구상금, 법인세 환급금, 카드포인트

※ 비용자성사업비 : 공제사업비, 예방사업비,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,
학교폭력피해지원비,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

2.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수입			산출기초	'21년 수입액 (A)	'20년 수입액 (B)	증감 (A-B)	
장	관	항 목					
10000 이전수입			1,000	1	3	△2	
16000 기타이전수입			1,000	1	3	△2	
16100 민간이전수입			1,000	1	3	△2	
16101 기부금			○ 교육청교육금고	1,000	1	0	
16102 지원금			○ 교육청판결금 정산	0	0	1	△1
16102 지원금			○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금	0	0	1	△1
20000 자체수입			7,044,411,300	7,044,411	7,462,104	△417,693	
24000 이자수입			27,320,000	27,320	104,995	△77,675	
24100 이자수입			27,320,000	27,320	104,995	△77,675	
24101 예금이자수입 (공제사업)			○ 정기예금이자	3,500,000	93,060	△89,560	
24101 예금이자수입 (상담지원)			○ 기타예금이자	21,500,000	10,835	10,665	
24101 예금이자수입 (학교폭력)			○ 기타예금이자	120,000	100	20	
24101 예금이자수입 (학교폭력)			○ 기타예금이자	2,200,000	1,000	1,200	
27000 기타수입			7,017,091,300	7,017,091	7,357,109	△340,018	
27200 기타수입			7,017,091,300	7,017,091	7,357,109	△340,018	
27203 그외수입			○ 공제로 <교육청일괄 징수> 5,932,604,730 · 유치원(공립) - 2,530원×17,496명 44,264,880 · 초등학교(공립) - 4,400원×387,827명 1,706,438,800 · 중학교(공사특각종) - 9,350원×206,286명 1,928,774,100 · 고등학교(공사특각종고등기술) - 11,550원×194,348명 2,244,719,400 · 특수학교(전공과) - 11,550원×561명 6,479,550 · 방송통신고 - 1,000원×1,928명 1,928,000 <학교별 징수> 820,532,570 · 사립유치원 - 2,530원×57,126명 144,528,780 · 국,사립초등학교	6,753,137,300	6,753,137	6,938,912	△185,775

수입			산출기초	'21년 수입액 (A)	'20년 수입액 (B)	증감 (A-B)	
장	관	항					목
			- 4,400원×21,849명 · 국립,국제중학교 - 9,350원×2,363명 · 국립, 미지원 사립고등학교 - 11,550원×38,840명 · 특수학교 - 학교급별×489명 · 기타학교 - 학교급별×10,541명	96,135,600 22,094,050 448,602,000 5,408,370 103,763,770			
			27203 그외수입 ○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	30,584,000	30,584	24,342	6,242
			27203 그외수입 ○ 소방사업수익	120,000,000	120,000	290,000	△170,000
			27203 그외수입 ○ 학교폭력피해구상금 220,000,000원×42.4%	93,280,000	93,280	94,765	△1,485
			27203 그외수입 ○ 법인세환급금	20,000,000	20,000	9,000	11,000
			27203 그외수입 ○ 카드포인트	90,000	90	90	0
40000 기타				7,394,186,500	7,394,187	6,639,688	754,499
42000 예치금회수				7,394,186,500	7,394,187	6,639,688	754,499
			42100 예치금회수	7,394,186,500	7,394,187	6,639,688	754,499
			42101 예치금회수 ○ 사무국 임차보증금	248,347,500	248,348	248,348	0
			42101 예치금회수 ○ 공제사업 이월금	5,643,000,000	5,643,000	4,900,000	743,000
			42101 예치금회수 ○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금 이월금	140,000,000	140,000	86,620	53,380
			42101 예치금회수 ○ 학교폭력피해지원금이월금	1,362,839,000	1,362,839	1,404,720	△41,881
수 입 합 계				14,438,598,800	14,438,599	14,101,795	336,804

3. 지출계획

[분야] 교육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목	산출기초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				
유아및초중등교육						14,438,599	14,101,795	336,804
학교안전망 구축						14,438,599	14,101,795	336,804
학교안전망 구축						6,439,940	8,045,392	△1,605,452
공제사업						5,683,680	7,226,740	△1,543,060
1. 공제급여 지급						5,318,440	6,849,000	△1,530,560
가. 요양급여				310 보전금	376,000원×8,200건	3,083,200	4,420,000	△1,336,800
나. 장애급여				310 보전금		1,646,240	1,924,000	△277,760
1) 직접청구					43,624,000원×10건	436,240	624,000	
2) 소송청구					110,000,000원×11건	1,210,000	1,300,000	
다. 간병급여				310 보전금	15,000,000×1건	15,000	15,000	0
라. 유족급여				310 보전금	534,000,000원×1건	534,000	450,000	84,000
마. 위로금				310 보전금	40,000,000원×1건	40,000	40,000	0
2. 공공제도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탁						37,300	39,600	△2,300
가. 장애, 유족, 간병 자문				210 운영비	500,000원×35건	17,500	19,800	△2,300
나. 의료 및 법률 자문				210 운영비	330,000원×36건	11,880	11,880	0
다. 법인 자문료				210 운영비	12월×330,000원×2건	7,920	7,920	0
3. 보상심사위원회						21,000	25,200	△4,200
가. 참석수당				210 운영비	15명×200,000원×5회	15,000	18,000	△3,000
나. 회의경비				210 운영비	600,000원×5회	3,000	3,600	△600
다. 위원회운영비				230 업무추진비	20명×30,000원×5회	3,000	3,600	△600
4. 소송업무 수행						174,440	164,440	10,000
가. 변호사 선임료				210 운영비	5,000,000원×30건	150,000	150,000	0
나. 소송비용				210 운영비	1,000,000원×20건	20,000	10,000	10,000
다. 송무활동비				210 운영비	2명×30,000원×30건	1,800	1,800	0
라. 소송자문료				210 운영비	330,000원×8건	2,640	2,640	0
5. 손해방지 및 긴급조치 비용 지원						25,500	41,500	△16,000
가. 손해방지				310 보전금	3,000,000원×3건	9,000	9,000	0
나. 변호사 선임료				210 운영비	5,000,000원×3건	15,000	30,000	△15,000
다. 소송비용				210 운영비	500,000원×3건	1,500	2,500	△1,000
6. 판결금지원						50,000	50,000	0
가. 교육감 판결금 지원				310 보전금	50,000,000원×1건	50,000	50,000	0
7. 중앙회 분담금				210 운영비	57,000,000원×1건	57,000	57,000	0

[분야] 교육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목	산출기초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	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					사업내역
				예방사업		478,330	488,783	△10,453	
				1.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		40,000	110,250	△70,250	
				가. 집합연수	210 운영비	0	36,000	△36,000	
				나. 사이버연수	210 운영비	40,000	74,250	△34,250	
				1) 회의비		500,000원×2회	1,000	0	1,000
				2) 자료수집비		3,000,000원×1회	3,000	0	3,000
				3) 자문위원수당		200,000원×5명×2회	2,000	0	2,000
				4) 연수과정 개편		3,400,000원×10차시	34,000	74,250	△40,250
				2. 교육공무직 안전연수과정 운영	210 운영비	0	1	△1	
				3. 교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	210 운영비	0	50,000	△50,000	
				4. 교육청 연계 예방사업		23,760	30,031	△6,271	
				가. 학교안전교육단	210 운영비	9월×30,000원×88건	23,760	30,030	△6,270
				나. 교육청연계 사업	210 운영비	0	1	△1	
				5.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		303,150	107,001	196,149	
				가. 공모전(안전바라미)	210 운영비	50,000	37,000	13,000	
				1) 시상금		20,000	20,000	0	
				· 대상(팀1/개인1)		500,000원×5명	2,500	2,500	0
				· 최우수상(팀2/개인2)		400,000원×12명	4,800	4,800	0
				· 우수상(팀3/개인3)		300,000원×18명	5,400	5,400	0
				· 장려상(팀5/개인5)		150,000원×30명	4,500	4,500	0
				· 인기상/특별상		100,000원×28명	2,800	2,800	0
				2) 행사진행비		30,000	17,000	13,000	
				· 심사비		250,000원×10명×2회	5,000	5,000	0
				· 장소대여 및 진행자 섭외		7,500,000원×2회	15,000	3,000	12,000
				· 홍보 및 홈페이지 구현		5,000,000원×1회	5,000	0	5,000
				· 기타경비 (행정비용 등)		2,500,000원×2회	5,000	9,000	△4,000
				나. 공제제도 홍보	210 운영비	112,100	70,001	42,099	
				1) 홍보 디자인		0	10,000	△10,000	
				2) 리플렛제작및배송		51,000	0	51,000	
				· 제작비용		40원×1,000,000부	40,000	0	40,000

[분야] 교육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목	산출기초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				
					· 배송비용 5,000원×2,200교	11,000	0	11,000
				3) 달력제작및배송		26,600	25,500	1,100
				· 제작비용	3,000원×5,200부	15,600	15,600	0
				· 배송비용	5,000원×2,200교	11,000	9,900	1,100
				4) 언론기관 홍보	3,900,000원×5회	19,500	19,500	0
				5) 신규전산시스템홍보		0	1	△1
				6) 홍보물품 제작	15,000원×1,000개	15,000	15,000	0
				다. 유튜브콘텐츠개발	210 운영비	30,000	0	30,000
				1) 영상전문가 용역	5,000,000원×4회	20,000		
				2) 전문가 등 섭외	500,000원×2명×4회	4,000		
				3) 전문가 감수	500,000원×4회	2,000		
				4) 기타경비	1,000,000원×4회	4,000		
				라. 학교안전포럼개최	210 운영비	32,800	0	32,800
				1) 장소대관	2,000,000원×1회	2,000		
				2) 영상전문가 용역	20,000,000원×1회	20,000		
				3) 토론자 참여수당	300,000원×8명	2,400		
				4) 책자제작	10,000원×200부	2,000		
				5) 발제자 집필수당	1,000,000원×2명	2,000		
				6) 기타경비	200,000원×22명	4,400		
				마. 빅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예보제	210 운영비	35,000	0	35,000
				1) 카드뉴스제작	1,500,000원×10회	15,000		
				2) 웹툰제작	1,500,000원×10회	15,000		
				3) 전문가자문·감수	500,000원×10회	5,000		
				바. 학교안전컨설팅단 운영 등	210 운영비	43,250	0	43,250
				1) 전문위원 수당	300,000원×5명×25개교	37,500		
				2)기타경비 (홍보대사 선정 등)	30,000원×5명×25회 2,000,000원×1명	5,750		
				6. 전산화 사업		96,420	176,500	△80,080
				가. 인사,회계 시스템 개발	210 운영비	0	44,000	△44,000
				나. 콜센터운영비	210 운영비	5,000	0	5,000
				다. 민원응대시스템 개선	210 운영비	0	49,500	△49,500
				라. 휴대폰인증솔루션	210 운영비	2,420	0	2,420
				마. 전산시스템유지보수	210 운영비	49,000	50,000	△1,000
				바. 통합 홈페이지	210 운영비	0	33,000	△33,000

[분야] 교육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목	산출기초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	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					사업내역
				사. 안전사고통계모듈개발	210 운영비	40,000,000원×1회	40,000	0	40,000
				7. 조직·경영혁신			15,000	15,000	0
				가. 재정자문	210 운영비	500,000원×10회	5,000	5,000	0
				나. 조직진단컨설팅	210 운영비	10,000,000원× 1회	10,000	10,000	0
				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			27,980	71,440	△43,460
				1. 상담및심리치료지원			10,000	48,000	△38,000
				가. 상담 및 심리치료	310 보전금	500,000원×20건	10,000	48,000	△38,000
				2. 상담자문위원회 운영			6,000	11,460	△5,460
				가. 참석수당	210 운영비	7명× 200,000원×3회	4,200	8,400	△4,200
				나. 회의경비	210 운영비	300,000원×3회	900	1,800	△900
				다. 위원회운영비	230 업무추진비	10명× 30,000원×3회	900	1,260	△360
				3. 자문료			1,980	1,980	0
				가. 법률 및 의료자문	210 운영비	330,000원×6건	1,980	1,980	0
				4. 상담지원제도 홍보			10,000	10,000	0
				가. 상담지원제도 홍보	210 운영비	2,500,000원×4회	10,000	10,000	0
				학교폭력 피해지원			245,990	254,469	△8,479
				1. 학교폭력 피해지원			220,000	226,169	△6,169
				가. 심리상담비	310 보전금	1,200,000원×130건	156,000	163,204	△7,204
				나.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	310 보전금	800,000원×80건	64,000	62,965	1,035
				2. 구상권 행사 경비			25,000	25,000	0
				가. 소송 및 집행비용	210 운영비	250,000원×100건	25,000	25,000	0
				3. 자문료			990	3,300	△2,310
				가. 법률자문료	210 운영비	330,000원×3회	990	3,300	△2,310
				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			3,960	3,960	0
				1. 법률 자문료	210 운영비	330,000원×12월	3,960	3,960	0
				인적자원운용			1,605,446	1,666,721	△61,275
				인건비			1,269,416	1,291,445	△22,029
				1. 보수(월급여)			952,721	972,827	△20,106
				가. 기본급	110 인건비		576,494	589,344	△12,850
				1) 4급		5,400,000원×1명×12월	64,800	63,943	857
				2) 5급		4,586,400원×3명×12월	165,110	101,374	63,736

[분야] 교육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목	산출기초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	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					사업내역
					3) 6급	3,488,700원×3명×12월	125,593	139,169	△13,576
					4) 7급	2,546,800원×1명×12월	30,562	30,562	0
					5) 8급	2,267,010원×7명×12월	190,429	211,200	△20,771
					6) 9급		0	43,096	△43,096
					나. 대우수당	110 인건비 4,339,200원×0.041×12월	2,135	2,135	0
					다. 정근수당	110 인건비 45,500,000원×40.0%×2월	36,400	38,400	△2,000
					라. 명절휴가비	110 인건비 45,500,000원×60.0%×2월	54,600	57,600	△3,000
					마. 정액급식비	110 인건비 140,000원×15명×12월	25,200	26,520	△1,320
					바. 가족수당	110 인건비 80,000원×10명×12월	9,600	9,600	0
					사. 정근수당가산금	110 인건비 80,000원×13명×12월	12,480	12,480	0
					아. 연차휴가수당	110 인건비 160,000원×15명×10월	24,000	26,122	△2,122
					자. 관리업무수당	110 인건비	16,032	14,155	1,877
					1) 사무국장	5,400,000원×0.09×12월	5,832	5,755	77
					2) 부장	150,000원×3명×12월	5,400	3,600	1,800
					3) 팀장	100,000원×4명×12월	4,800	4,800	0
					차. 계급보조비	250 직무수 행경비	33,780	36,000	△2,220
					1) 4급	400,000원×1명×12월	4,800	4,800	0
					2) 5급	250,000원×3명×12월	9,000	6,000	3,000
					3) 6급	165,000원×3명×12월	5,940	5,940	0
					4) 7급	155,000원×1명×12월	1,860	1,860	0
					5) 8, 9급	145,000원×7명×12월	12,180	17,400	△5,220
					카. 퇴직연금	320 민간이전	150,000	150,000	0
					타. 기간제근로자보수	110 인건비 2,000,000원×2명×3월	12,000	10,471	1,529
					2. 수당		231,260	236,570	△5,310
					가. 초과근무수당	110 인건비	91,260	93,970	△2,710
					1) 5급	45,500원×3명×18시간×12월	29,484	18,366	11,118
					2) 6급	35,500원×3명×18시간×12월	23,004	25,076	△2,072
					3) 7급	25,500원×1명×18시간×12월	5,508	5,800	△292
					4) 8급	22,000원×7명×18시간×12월	33,264	37,489	△4,225
					5) 9급		0	7,239	△7,239
					나. 직책급여추진경비	250 직무수 행경비	31,200	31,200	0

[분야] 교육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목	산출기초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				
				1) 이사장(비상임)	2,000,000원×12월	24,000	24,000	0
				2) 사무국장(상임)	600,000원×12월	7,200	7,200	0
				다. 특정업무경비	250 직무수 행경비 14명×100,000원×12월	16,800	20,400	△3,600
				라. 성과상여금	110 인건비 80,000,000×1회	80,000	77,000	3,000
				마. 육아휴직수당	110 인건비 1,000,000원×12월	12,000	12,000	0
				바. 자녀학비보조수당	110 인건비	0	2,000	△2,000
				3. 4대보험		85,435	82,048	3,387
				가. 연금보험	320 민간이전 71,000,000원×4.50%×12월	38,340	37,800	540
				나. 건강보험	320 민간이전 71,000,000원×3.43%×12월	29,224	27,132	2,092
				다. 장기요양보험	320 민간이전 71,000,000원×5.76%×3.43%×12월	1,683	1,156	527
				라. 산재보험	320 민간이전 71,000,000원×0.80%×12월	6,816	6,720	96
				마. 고용보험	320 민간이전 71,000,000원×1.10%×12월	9,372	9,240	132
				업무추진비		23,800	23,960	△160
				1. 업무추진비		23,800	23,960	△160
				가. 기관운영	230 업무추 진비 833,300원×12월	10,000	10,000	0
				나. 시책추진 (이사장,사무국장)	230 업무추 진비 2명×525,000원×12월	12,600	12,600	0
				다. 정월가산	230 업무추 진비 80,000원×15명	1,200	1,360	△160
				운영비		312,230	351,316	△39,086
				1. 일반수용비		78,510	77,664	846
				가. 사무용소모품	210 운영비 1,500,000원×12월	18,000	12,000	6,000
				나. 행사비(워크숍)	210 운영비 15명×200,000원×2회	6,000	6,800	△800
				다. 인쇄물및유인물	210 운영비 400,000원×12월	4,800	4,800	0
				라. 등기비용,전자금융	210 운영비 100,000원×10회	1,000	1,000	0
				마. 세무기장수수료	210 운영비 500,000원× 12월	6,000	4,800	1,200
				바. 회계프로그램수수료	210 운영비	0	600	△600
				사. 전산화기기유지보수	210 운영비	7,010	6,664	346
				1) 홈페이지	1,045,000원×4회	4,180	3,300	880
				2) 웹기안기	110,000원×20석	2,200	2,044	156
				3) 전산통신유지보수		0	1,320	△1,320
				4) 백신프로그램구입	30,000원×21개	630	0	630
				아. 신문구독료	210 운영비 25,000원×12월	300	300	0

[분야] 교육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목	산출기초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	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					사업내역
				자. 시설장비유지	210 운영비	0	3,600	△3,600	
				차. 사무실청소	210 운영비	200,000원×12월	2,400	2,400	0
				카. 직원능력개발비	210 운영비		33,000	34,700	△1,700
				1) 직무능력연수		3회×500,000원×15명	22,500	22,500	0
				2) 중부권 직원연수		3회×100,000원×15명	4,500	6,000	△1,500
				3) 중앙회 직무연수		3회×100,000원×15명	4,500	4,500	0
				4) 감정치유교육		1회×100,000원×15명	1,500	1,700	△200
				2. 공공요금 및 제세			54,840	55,480	△640
				가. 전화인터넷통신요금	210 운영비	850,000원×12월	10,200	9,360	840
				나. 클라우드사용료	210 운영비	3,000,000원×12월	36,000	40,000	△4,000
				다. 우편요금	210 운영비	700,000원×12월	8,400	6,000	2,400
				라. 운전자보험	210 운영비	2명×10,000원×12월	240	120	120
				3. 특근매식비			8,640	8,640	0
				가. 특근매식비	210 운영비	8,000원×6명×15일×12월	8,640	8,640	0
				4. 회의비			29,960	25,800	4,160
				가. 참석수당	210 운영비	25명×200,000원×4회	20,000	17,600	2,400
				나. 운영비	230 업무추진비	33명×30,000원×4회	3,960	4,200	△240
				다. 기타경비	210 운영비	500,000원×12회	6,000	4,000	2,000
				5. 임차료			56,880	96,012	△39,132
				가. 사무실임차료	210 운영비	1,500,000원×12월	18,000	30,492	△12,492
				나. 사무실관리비	210 운영비	2,500,000원×12월	30,000	48,000	△18,000
				다. 차량임대료	210 운영비		0	7,440	△7,440
				라. 복합기	210 운영비	2대×250,000원×12월	6,000	7,200	△1,200
				마. 공기청정기,정수기	210 운영비	6대×40,000원×12월	2,880	2,880	0
				6. 복리후생비			22,200	24,120	△1,920
				가. 맞춤형복지비	240 복리후생비	2회×700,000원×15명	21,000	23,800	△2,800
				나. 동호회지원비	240 복리후생비	4회×20,000원×15명	1,200	320	880
				7. 여비			38,400	38,400	0
				가. 관내출장비	220 여비	10회×8명×20,000원×12월	19,200	19,200	0
				나. 관외출장비	220 여비	2회×4명×200,000원×12월	19,200	19,200	0

[분야] 교육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목	산출기초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	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					사업내역
				8. 부서운영경비		4,200	4,200	0	
				가. 부서운영경비	210 운영비	2부서×175,000원×12월	4,200	4,200	0
				9. 기타일반수용비		3,600	6,000	△2,400	
				가. 기타일반수용비	210 운영비	300,000원×12월	3,600	6,000	△2,400
				10. 자산취득(비품 구입)	430 유형자산	15,000,000원×1식	15,000	15,000	0
				예비비 및 기타		6,393,213	4,389,682	2,003,531	
				보유준비금		5,068,744	3,128,385	1,940,359	
				1. 보유준비금	710 예비비	4,820,396	2,880,038	1,940,358	
				2. 임차보증금	710 예비비	248,348	248,347	1	
				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예치금		112,140	15,281	96,859	
				1.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금 예치금	710 예비비	112,140	15,281	96,859	
				학교폭력피해지원금예치금		1,212,329	1,246,016	△33,687	
				1. 학교폭력피해 지원금 예치금	710 예비비	1,212,329	1,246,016	△33,687	
지 출 합 계						14,438,599	14,101,795	336,804	

Ⅲ.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

1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도별	조성액						집행액						잔액 (a-b)
	계 (a)	교 특 전 입 금	기 부 금	융 자 금 회 수	이 자 수 입	기 타 수 입	계 (b)	비 용 자 성 사 업 비	융 자 성 사 업 비	인 력 운 영 비	기 본 경 비	기 타 지 출	
~2015	85,710	9,365	254		17,458	58,633	75,681	64,665		5,965	5,051		10,029
2016	5,970	60			140	5,770	6,309	5,200		718	391		△339
2017	7,966	1,672			149	6,145	6,971	5,747		870	354		995
2018	5,869				167	5,702	7,897	6,601		944	352		△2,028
2019	6,609				85	6,524	8,247	6,826		1,110	311		△1,638
2020	7,462				105	7,357	9,712	8,045		1,292	375		△2,250
2021	7,044				27	7,017	8,045	6,440		1,269	336		△1,001

※ 조성액 및 집행액에서 예치금(회수)는 제외됨

※ 2019년까지는 결산액 기준, 2020~2021년은 계획액 기준

2. 예치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예치은행	'19년도말 현재액	'20년도말 현재액(a)	'21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-a)	비 고
합 계	7,019,253	7,394,187	6,393,213	△1,000,974	
농협은행	6,770,905	7,145,839	6,144,865	△1,000,974	
임차보증금	248,348	248,348	248,348	0	